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 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 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u>금액</u> 을 말 한다.	8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 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u>학교(이하</u>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예상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할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⑦ <u>제6항</u> 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u>제1항</u>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u>동향(제2</u> 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단 신설>	7
	주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6 ㅈ/고그 및 시처) ① (새 랴)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고고 미 시청) ① (천해고 가요)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u>기준 등</u>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u>기준 등</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u>기준 등</u>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u>기준 등</u> < <u>신 설〉</u> < <u>신 설〉</u>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생략)
- 9.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 10. (생략)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 우 제1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 여야 하며, 제2호의 연구자 및 제3호의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 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우 <u>수한</u> 연구자
-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 역에 있는 연구기관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⑤ (생략)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 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 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 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해서는 아니 된 다.
- ⑦ ~ ⑨ (생 략)
-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 9. - -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
- 10. (현행과 같음)
- \bigcirc - - -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
-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 은 연구자
-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 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7) ~ (9) (현행과 같음)

- - - - 같고- -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 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 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 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u>그 전자문서(「전자서명</u>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 다)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 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 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 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 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② (생 략)	<u>한다)를</u> <u>전자문서로</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1. (생 략)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 구기관·연구책임자· <u>연구목표</u>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연구목 표·참여기업
3. (생 략)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 (생 략)	3. (현행과 같음) < <u>५</u>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1. ~ 8. (현행과 같음)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 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 ④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M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u>등 비영</u> <u>리법인</u> 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	②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 · 2. (생 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1의4의 기준보다들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연구기간 동안 별표 1의4의 기준보다들어 연구기간 등안 별표 1의4의 기준보다들어난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기준보다들어난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기준보다 줄어든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u>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⑥ 대학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u>비영리법인</u>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연차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 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 - - - -.

⑧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 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 ①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 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5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16>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17>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9항 본문에 따라 연구 개발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출 때에는 연구개 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 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위(職位)·성 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제17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 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 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 용하려는 경우
-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 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 라 신고할 것
-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 리할 것
-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 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국 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

	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 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 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 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이 대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위원회에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그 밖의</u>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의원회에 의원회에 의원회에 의원회에

1. 당연직 위원: <u>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u> , 교 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1 <u>국가과학기술위원회</u>
보건복지부, 환경부, <u>국토해양부</u> , 농촌진흥청, 중소기 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 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생 략)	
2. (水 年) ⑦ ~ ⑨ (생 략)	2. (연영과 실금) ⑦ ~ ⑨ (현행과 같음)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	10
연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u>비영리법인</u>
①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	①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소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위</u> 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 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성한다. 다만, 대학분야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데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국가과학기술위원	
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u>항목에 대하여 국가과</u> 하기숲의원회가 저하여
호의 <u>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u>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u>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u>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호의 <u>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u>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 대	5. <u>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u>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u>〈삭 제〉</u>
7.·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4 ~ 6 (W et)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 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중에는 근무기단체 <u>세중이의와 현의</u> .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생 략)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3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u>3개월</u>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생 략)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u>국가안보</u>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생 략)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생 략)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u>있다.</u>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u> <u>사유가 없어질 때까지</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④
	<u>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u>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u>경우</u>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u>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u> 2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	<u>경우: 1년 6개</u> <u>월 이내</u> 3
3. 점역기업의 대표가 정립비를 보고 등의 성정인 사 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⑤ (생 략)	<u>트 ' "</u> ⑤ (현행과 같음)
데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 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1. (생 략)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u>확인서</u> 로 갈음할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	4
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	
를 세되한 후 사용산역이 있거나, 세1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대할미 사용결식의 모고대용에 대한 검도 및 제2성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	이 직접비
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	<u> </u>
하게 하는 금액	
	O /원레기 가 O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
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	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연구기관의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	사용하고 남은 금액
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單價)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	
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
	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
	<u>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u>
	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
	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데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u>결과로</u>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u>과정에서</u>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 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	
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u>결과로</u>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당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의 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 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 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 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생 략)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u>영리법인인</u>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	② 영리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 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신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연구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등으로서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일 경우 보안설비	<삭 제>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u>매년</u>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u><신 설></u>	8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 ② (생 략)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② (현행과 같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후 <u>3개월</u>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会) ③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④·⑤ (생 략)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u>문서</u> 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국가정보원장에게</u> 알려야 한다. <u>〈단서 신설〉</u>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1. ~ 3. (생 략)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 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⑧
⑨ (생 략)	<u>다만, 연구개발과제가</u>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 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 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 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⑫ (생 략)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 과를 <u>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u> 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4)・(5) (생략)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 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 · <u>계획서 및 제15조제1항</u> 에 따른 최종보고서 · 요약서

2. ~ 5. (생략)

<17> · <18> (생략)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 <19>- - -

H 이자세계	통보하여야	싫다.
모원장에게	중모아어야	악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u>다만</u>,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 ⑫ (현행과 같음)

① · ① (현행과 같음)

1. - - - - - - - - - - - - - - -

- - 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 실적·계획서

2. ~ 5. (현행과 같음)

<17> · <18> (현행과 같음)

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 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 호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 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 례 및 활용계획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과학기 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 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 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	5
치장소, <u>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u>	<u>활용범위, 용도, 상태</u>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페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00) (원케크 카이)
<20> ~ <22> (생략)	<20> ~ <22> (현행과 같음)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 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3>
<24>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24> 제13항에 따른 기관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 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략)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u>문화체육관광부</u>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u>국가과학기술위원회</u> ,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산립청, 소방방재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1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단서 신설> 5. - -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 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 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 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 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u>경우: 2년 이</u>내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 - - - - 2년 이내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u>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 <신 설>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신 설>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신 설>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 설>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 기간 적용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생 략)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 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신 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 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 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 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신 설></u>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u><신 설></u>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 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신 설>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연구개발비의 집행
<u><신 설></u>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u><신 설></u>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로 다녀도 현아의 체결한 거의에는 여기병 연구계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 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
	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
	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
	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u>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u> 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
	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
	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
	<u>구기관으로 귀속된다.</u>
<u>〈신</u> 설〉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
	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

	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다음 각 호의</u>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u>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